

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부모 지원 과제*

허민숙**

초 록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가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그 간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있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할만하나,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이 정비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주목을 요한다.

이에 이 글은 해외의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탐색하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대응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국에서는 통합적인 지원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조하는 점이 확인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자립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부모 정책을 고안하는 데 있어 청소년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소년부모를 특정한 지원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자이지만 무엇보다 성장과 발달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주거, 자립, 가정방문, 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다양한 가족, 청소년부모,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지원제도, 가정방문서비스

* 이 글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제5장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minsseo@assembly.go.kr)

I. 서론

청소년부모란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일컫는다. 그간 청소년 부모는 이른 연령에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미혼모를 통칭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지원 대상이었으나, 청소년부부는 한부모가 아니었기에 어느 법률에서도 청소년 부모를 특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다. 즉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한부모일 것이란 단정에 의해 청소년으로서 함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청소년부부(모)는 법적·정책적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청소년부모의 정책적 소외는 청소년한부모를 돕던 민간 지원단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부모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공론화되었다.

이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 것은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해당 법률 제2조 제6호는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부모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지하였다. 또한 제18조의2에서 제18조의5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공식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7월 첫 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였다. 2022년 총 1,291명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이 지급되었다(여성가족부, 2022).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곤란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양과 돌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과 차이가 있지만, 저연령이라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취약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응답자의 61.3%가 양육비 및 생활비 등 경제적 고민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여 『청소년한부모 실태조사』(정가원 외, 2021)의 69.4%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 508). 높은 경제적 부담은 고용 상황과 관련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응답자의 52.1%가 취업 중이라 답하였고, 이들의 절반 이상인 54.7%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답변하였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동일 조사기간의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한부모는 임신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아 활발한 경제활동이 높은 소득을 보장하진 못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66). 한편, 참고할만한 것은 대학 이상의 학력인 한부모의 경우에는 취업률도 가장 높았고(89.7%),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은 점도 확인된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 237). 이는 청소년부모가 무사히 자립하고 사회에 정착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 학업을 완료하는 것이 비교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 여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부모의 학업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부모의 학업중단률은 15.8%이나 만 20세 이하인 경우 학업중단률은 38.8%로 상승하였고, 첫 출산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업중단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임신·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45.2%,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3.1%로 청소년기의 출산 및 양육환경이 청소년부모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2022: 509).

출산 이후 학업지속 경험 관련하여 복학이나 재입학 비율은 21%로 높지 않았고,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도 11%에 그치고 있었다. 학업 또는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업복귀 및 직업훈련 청소년부모의 44.9%, 직업·훈련 포기 청소년부모의 43.4%가 ‘자녀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510).

법률 개정 이후, 정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이같이 청소년부모의 양육 및 자립 여건이 확인되었다면, 해외 사례를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적 탐색을 이어갈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10대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주요국의 청소년부모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부모 지원 해외 사례

1. 미국 연방정부

1) 생계보조프로그램(TANF)

연방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 따라 마련된 생계비보조급여(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를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법정 후견인, 성인 친족 또는 기관에서 인정한 생활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거나 오히려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둘 중의 한 명이 1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의 동거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혜 대상자가 된다. TANF의 수혜자로서 학업지속(school requirement)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학업활동에 필요한 아동보육, 교통비, 그 외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급을 받으나, 주거비용이 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는 별도의 주거급여(Special Housing Allowance)를 지급받을 수 있다.¹⁾

2) 가족간호사 방문프로그램

미국 간호사가족파트너십(Nurse-Family Partnership: NFP) 프로그램은 산전·산후 집중돌봄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specially trained registered nurse)가 저소득층 10대 청소년임산부 및 산모를 방문하여 그들의 첫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선정된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자로서 28주 임산부부터 지원 대상이며, 적절한 산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산 후에는 자녀양육 서비스(아동영양 및 두뇌발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도 실시한다. 피입교육, 학업지속, 취업, 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

1) Maine Equal Justice. TANF and Teen Parents. https://maineequaljustice.org/site/assets/files/1690/doc_2_4_teen_parents_tanf.pdf에서 2023.9.1. 인출.

균 17개월 동안 25~30회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Miller, 2015).

3) 가정방문프로그램

미국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은 2010년 이래 모성, 유아, 아동가정방문(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MIECHV)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임신 중인 임신부뿐 아니라 유아기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 이전 아동이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며, 엄마와 자녀의 건강을 보살피고, 아동발달 및 아동의 취학 준비를 돕는다. MIECHV 프로그램은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과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협업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MIECHV 프로그램은 청소년부모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가족간호사 방문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MIECHV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총 7만 1천 가족으로 약 14만 명의 부모와 7만 1천 명의 아동이 포함되었다. 92만 5천 회가 넘는 가정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0대 미혼모 가족은 전체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1).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RSA)의 웹페이지에서 주정부의 대략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국 주정부

미국 주정부별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TAP(TeenAge Parenting Program)/TAPP(TeenAge Parenting Program)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각 주정부 및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상이하나, 청소년부모의 학업 지속 및 두 번째 임신 예방이 주요 초점이라 볼 수 있으며 통합지원을 지향한다.

1)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는 법률 Florida Statute 1003.54(3)(c)에서 10대 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 건강, 사회서비스, 부모교육, 그리고 교통수단

등이 지원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지역 내 공립학교(district school)는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10대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립학교가 학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다.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수행하거나 그와 유사한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그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임신전·후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상담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의 통학거리와 관련 없이 교통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Family and Community Outreach, 2015).

TAP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별도 기관(Separate Center)에서 TAP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부모에게는 임신 및 양육과 관련한 교육 및 학업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그 외 건강 및 사회지원 서비스는 학교 또는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지원된다. 보육서비스 역시 학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학교로부터 직접 제공되거나 학교와 계약한 민간아이돌봄제공자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2) 기타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TAP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특수학생교육프로그램,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시행 시 TAP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방식이다. 건강 및 사회지원 서비스, 그리고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3) 직업기술학교(Vocational-Technical School)에서 TAP가 제공된다. 청소년부모가 직업훈련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별도의 건강 및 사회지원,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4) 일반학교 모델은 청소년부모가 TAP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이던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선호되는 운영 모델로 일컬어진다.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학교 일과시간에 TAP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TA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학교 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재활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Rehabilitative Service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서비스센터를 통해 TAP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부모가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TAP 서비스를 서비스센터에 의뢰한다. 서비스센터가 지원요청을 받으면 청소년부모에

2) Florida Government. The 2023 Florida Statu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1000-1099/1003/Sections/1003.54.html에서 2023.10.17. 인출.

게 연락한다. 각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자체 TAP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방식이다. 6) 통합서비스학교(Full Services School)는 TAP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건강 및 사회지원서비스 및 보육 등이 학교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TAP에 대한 청소년부모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운영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Family and Community Outreach, 2015: 12-13).

2)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의 행정법규(Administrative Code) 5101:1-23-50³⁾ 및 2006 Ohio Revised Code 5107.30⁴⁾은 LEAP(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LEAP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10대 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1989년 중반에 도입되었다. 임신 중인 10대 산모, 자녀의 부 또는 모로서 오하이오주의 생계지원 프로그램인 Ohio Works First의 수혜자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LEAP의 목적은 10대 부모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다. 오하이오주 페어필드 카운티(Fairfield County)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학교에 등록하여 성실하게 출석하면 매달 \$62를 추가로 지급해준다. 학교 입학 시에는 \$1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학년을 무사히 마칠 때마다 \$100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 \$500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LEAP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데, 연계 서비스 항목을 살펴보면, 상담, 법률지원, 보육지원, 부모교육, 공과금 지원, 과외지원, 주거지원, 청소년서비스, 교통지원, 식료품 및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Fairfield County Job & Family Services, 2022).

3) Cornell Law School. Ohio Admin. Code 5101:1-23-50 - Ohio works first: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program. <https://www.law.cornell.edu/regulations/ohio/Ohio-Admin-Code-5101-1-23-50>에서 2023.10.1. 인출.

4) Justia. 2006 Ohio Revised Code - 5107.30.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program for teens. https://law.justia.com/codes/ohio/2006/orc/jd_510730-10877.html에서 2023.10.1. 인출.

3) 워싱턴주

워싱턴주에서는 10대 임신부 및 청소년 부모를 위해 GRADS(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⁵⁾ 1980년대 초 워싱턴주의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고등교육을 표방하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주의 공립학교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주 내 23개의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매해 400-50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거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ADS는 청소년부모의 고교 졸업과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GRADS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이 학생과 부모라는 “두 역할”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에게 고용 및 자녀양육 관련 수업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수업을 듣는 동안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on-site) 또는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추가 지원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코디네이션 등이 포함된다(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16). GRADS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서 GRA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부모가 22세에 이르기 전까지 고등학교 학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부모에 비해 10.6%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4세 이전에 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은 6.5%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1인의 청소년부모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7,588이지만, 청소년부모에게 창출되는 이익은 \$22,8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16).

4)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AL-Lear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0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학업과정을 무사히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학업을 완료하여 독립적이고 건강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고교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부모가 지원 대상이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첫째는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5) 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GRADS).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learning-alternatives/graduation-reality-and-dual-role-skills-grads>에서 2023.10.13. 인출.

사례관리사를 배정하여 학업완료는 물론이고, 건강지원 등 그 밖의 사회서비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는다. 둘째, 학업완료에 필수적인 다른 지원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교통지원, 교육비 지원이 해당된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교통비를 제공해 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셋째, 고등학교 학업과정을 무사히 이수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한다. 졸업장을 받는 경우에는 \$500를 지급하고 격려한다.⁶⁾

3. 영국

1) 가정방문서비스

「건강 및 사회돌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및 시행 규정 (Health and Social Care Act Regulations 2014)」에 따라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임신부 및 출산모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방문사(health visitor) 사업⁷⁾을 눈여겨볼 만하다. 자녀가 출생한 후 10일 이내에 건강방문사가 방문하여 지역간호사(local midwives)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건강방문사는 숙련된 간호사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며, 홀로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가족간호사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FNP) 프로그램은 청소년부모를 위해 특화된 제도이다. FNP는 처음 출산한 취약 계층의 젊은 여성(19세 이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영국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NFP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받아 2007년 가족간호사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FNP)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다.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첫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가정방문프로그램이다. 10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이 호평을 받은 이후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잉글랜드에서만 60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6) Government of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L-Learn. <https://www.cdss.ca.gov/cal-learn>에서 2023.9.15. 인출.

7) NHS. Services and support for parents: Your pregnancy and baby guide. <https://www.nhs.uk/conditions/pregnancy-and-baby/services-support-for-parents/>에서 2023.10.1. 인출.

고 있다. 영국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의 위임을 받아 FNP의 업무를 관장한다(Public Health England, 2020: 16). 프로그램 도입 시 10대 산모 및 10대에 첫 출산한 미혼모 등이 대상이었으나, 잉글랜드에서는 만 24세의 미혼모 및 미혼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⁸⁾ 임신 28주차에서부터 출산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총 64회까지 제공된다.

FNP는 청소년부모가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기초적인 양육법을 지도하는 등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Department of Health, 2012: 5). 양육자로서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모가 이후 성인으로서의 자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미래 설계에도 도움을 준다.

2)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자녀를 양육하면서 파트너와 살고 있다면 합동통합급여(joint universal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둘 모두 25세 이하라면 2023년 기준 월 £458.51(약 66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에게는 별도로 £315(약 46만 원)이 책정된다. 여기에 보육기관 이용료의 85%에 달하는 아동보육비 £646.35(약 103만 원)가 지원된다. 주거급여도 별도 지급 대상이다(Child Poverty Action Group in Scotland, 2023).

이때 파트너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이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아버지일 필요는 없다. 동성커플도 배제하지 않는다. 청소년부모 모두가 현재 근로상태가 아닐지라도 통합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둘 중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지정되면, 주양육자는 수급을 조건으로 구직할 필요는 없으나 자녀의 연령이 1세가 되는 시점까지 근로중점인터뷰(work-focused interview)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자녀가 2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근로할 준비를 해야하고, 3세가 되는 시점에는 구직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도 통합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⁹⁾

8) Family Nurse Partnership. The Programme.
<https://fnp.nhs.uk/about-us/the-programme/>에서 2023.9.15. 인출.

9) Child Poverty Action Group. Financial Help for Young Parents.
<https://cpag.org.uk/welfare-rights/resources/factsheet/financial-help-young-parents>에서 2023.10.1. 인출.

3) 주거지원

청소년부모인 경우 거주지역 내 기관(county council)에 주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카운티 카운실은 영국 지방정부에서 교육, 교통, 도시계획, 재난 및 공공안전, 사회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다.¹⁰⁾ 현재 홈리스 상태이거나 8주 이내에 홈리스가 예상되는 경우 도움을 카운티 카운실에 주거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법률 「홈리스 감소법(Homelessness Reduction Act)」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Ministry of Justice,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1).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주거계획(Personalised Housing Plan)을 수립하고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거지원 신청자가 최소 6개월 동안 안전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일 주거신청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면 긴급주거를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 대상으로 간주되어 즉시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Ministry of Justice, HM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1: 26). 또한, 통합급여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교육지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Care to Learn”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완료에 필수적인 자녀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¹¹⁾ 1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보육비를 지급한다. 20세 미만의 청소년부모가 주양육자(main carer)이면서,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잉글랜드 지역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런던 시 외곽에 거주하는 경우 주당 £180(약 30만원), 런던 시내에 거주하는 경우 £195(약 32만 원)을 보육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비는 아동이 등록된 보육기관 등에 직접 송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¹²⁾

10) Government of UK. Understand how your council works. <https://www.gov.uk/understand-how-your-council-works>에서 2023.10.16. 인출.

11) Government of UK. Care to learn. <https://www.gov.uk/care-to-learn>에서 2023.10.15. 인출.

12) Government of UK. Care to Learn. <https://www.gov.uk/care-to-learn/what-youll-get>에서 2023.10.1. 인출.

5) 민관협력

영국 청소년부모 지원제도에서 살펴볼 만한 것은 민관협력 부분이다. 카운티 카운실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간기관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인상깊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주(Gloucester)의 Elim Housing이라는 기관은 16~21세를 대상으로 Gloucester Young Parents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부모에게 지원상담사(support worker)가 배정되어 함께 자립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서비스로 연계되는 창구 역할을 글로스터셔주 카운티 카운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친숙한 행정기관이 민간지원기관과 협력하고 청소년부모를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고 있다.¹³⁾

4. 캐나다

캐나다는 「사회보장법(Social Assistance Act)」에 따라 청소년부모 등을 지원하며 주 정부별로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또는 청소년부모가 저소득자라면 수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보육비보조금법(Child Care Subsidy Act)」 R.S.B.C. 1996, c.26,s.13, 「보육비보조금법 규정(Child Care Subsidy Regulation)」¹⁴⁾에 근거해 25세 미만의 청소년/청년부모를 위한 청소년 부모 프로그램(Young Par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¹⁵⁾ 청소년부모의 고등학교 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 돌봄 비용을 월 최대 CAD1,500(약 148만 원)까지 지원한다.

13) Elim Housing. Services for Young Parents.

<https://www.elimhousing.co.uk/support-services/services-for-young-parents>에서 2023.10.1. 인출.

14) Child Care Subsidy Regulation,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74_97에서 2023.10.1. 인출.

15) British Columbia. Young Parent Program.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caring-for-young-children/child-care-funding/young-parent-program>에서 2023.10.1. 인출.

청소년부모는 Grade12(고교과정)를 완수하기 위한 교육·학습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그 자녀는 인증된 보육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아동 및 가족발전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의 재정지원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The Cridge Young Parent Outreach)이 운영 중에 있다.¹⁶⁾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교육, 주거, 건강, 자녀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 부모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온타리오주

온타리오(Ontario)주에서는 「온타리오 노동법(Ontario Works Act)」 Sec4, 7(4), 「온타리오 노동법 규정(Ontario Works Act Regulation 134/98)」 Sec2(3), 10, 26(9)에 따라 청소년부모를 위한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LEAP)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는 16~17세 청소년 부모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18세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LEAP 프로그램은 자녀양육 청소년부모가 학업 및 고용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부모 교육을 통해 좋은 양육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LEAP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각 비용(보육료, 교통비, 학교 재료비, 교복, 교육목적의 연수비용, 졸업비용, 개인교사비용, 상담비, 여가활동 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다. LEAP 과정을 완료한 자에게는 CAD500(약 49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¹⁷⁾

3) 뉴브런즈윅주

「가족수입안정법(Family Income Security Act)」에 근거해 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발전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가 주관하는 The Prenatal Benefit Program과 Postnatal Benefit Program이 있다. 출산 이후 음식비용 등을

16) The Cridge Young Parent Outreach Program. Outreach Support Services. <https://youngparentoutreach.com/outreach-services/>에서 2023.10.1. 인출.

17) Government of Ontario.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https://www.ontario.ca/document/ontario-works-policy-directives/82-learning-earning-and-parenting-leap>에서 2023.10.1. 인출.

충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다. 가족 총소득이 CAD29,000(약 2,957만 원) 이하라면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6~18세 연령이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다. 18세 이상이고 배우자(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2020). 다른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된다.

음식, 의료,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지원금(Social Assistance)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지원 대상자가 되면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보육(day care) 서비스도 제공된다. 뉴 브런스윅 주는 사회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 외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지원을 독려하고 있다.¹⁸⁾

5. 아일랜드

1) 10대 부모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아일랜드에서는 10대 부모지원프로그램(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TPSP)을 운영 중에 있다. 「The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에 의해 설립된 아동 및 가족지원국(Child and Family Agency: TUSLA)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기개입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다. TUSLA 프로그램 중 TPSP는 20세 미만 청소년부모의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 및 그 가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The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2020).

TPSP의 목적은 조기개입을 통해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총 634명의 10대 청소년 양육모가 TPSP의 지원을 받았다. TPSP는 지역내 서비스 기관(가족지원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학교, 비정부기구(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10대 미혼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프로그램에는 건강, 정서지원, 부모교육, 관계개선, 주거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자녀돌봄 서비

18) New Brunswick. Case Management - Social Assistance Clients.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social_development/services/services_renderer.14336.Case_Management_-_Social_Assistance_clients.html에서 2023.10.1. 인출.

스 등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연계

서비스 지원기관에 접촉을 하면, 담당자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날 것인지를 상의하게 된다. 청소년부모가 홀로 만나도 되고, 부부가 함께 만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또는 자신이 선택하는 그 누구를 동반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원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첫만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된 이후에 지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임신기에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도 일률적이지 않다. 청소년 당사자의 개인 사정에 맞추어서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가족과 파트너를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상담사는 출산을 전후하여 청소년부모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를 지원한다. 부모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설명한다. 무엇보다 상담사는 청소년부모의 복지권리(welfare rights)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¹⁹⁾

3) 조부모지원

TPSP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10대 자녀의 임신이 가져올 충격과 자녀 출산 이후 가족 내 갈등, 자녀양육을 끝내고 여유로운 시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신생아 등장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동의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게 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자신의 집에서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에게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이 지급된다. 손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키우는 것을 포기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주양육자가 된다면 후견인 수당(Guardian's Payment)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법정 후견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손자녀를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그 외 손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 정보 및 연락처를 제공하여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 The Bessborough Centre.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https://www.bessborough.ie/teen-parents/>에서 2023.10.1. 인출.

(Treoir, 2020).

4) 학업지원

TPSP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완료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학업완료프로그램(The School Completion Programme: SCP)을 통해 자녀돌봄, 교재, 교통비, 교복 등을 지원해 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Childcare Employment and Training Support(CETS)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전일제 자녀 돌봄서비스를 주당 €25(약 3만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²⁰⁾ 학생인 부모는 ‘모성관련 결석자를 위한 가정 내 교육비(Home Tuition Grant for Students on Maternity Related Absence)’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교사에게 최장 6개월 간 90시간 지도받을 수 있는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5) 소득보조

청소년부모에게는 소득보조금(family income supplement)이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당 19시간 이상 일하지만, 저소득인 경우, 소득보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청소년 부모이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보조금(job seekers allowance)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2020).

6. 호주

1) 상담서비스

호주정부는 2010년 Pregnancy, Birth and Baby라는 명칭의 전국 전화상담서비스(National Helpline)를 설치하였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동영상 상담,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 임신 중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 5세 미만의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양육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영주체는 Healthdirect Australia이다.²¹⁾ 등록된 간호사가 상담에 응대한다. 임신, 출

20) Laois County Childcare Committee. Training and Employment Childcare Scheme.
<https://www.laoischildcare.ie/scheme/training-and-employment-childcare-scheme-tec/>에서 2023.10.1. 인출.

산, 양육과 관련된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2) 소득지원

Pregnancy, Birth and Baby의 웹사이트에서는 10대 부모가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²²⁾ Newborn Upfront Payment and Newborn Supplement, Family Tax Benefit, Parenting Payment는 자녀양육부모에 대한 현금급여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조정소득이 AUD62,634(약 5,348만 원)이하라면 Family Tax Benefit A의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액이 감소한다.²³⁾ 또한, Family Tax Benefit A의 수혜대상이면 Newborn Upfront Payment AUD 641(약 54만 7천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에 대한 추가지원금인 Newborn Supplement는 최장 13주간 최대 AUD1,924.65(약 164만 3천 원)이 지급되는데 Family Tax Benefit A의 기본급여 수혜대상이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Parenting Payment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일방의 2주당 소득이 AUD1,324.17(약 113만 원), 다른 부모의 소득이 AUD2,481.50(약 212만 원) 이하면 수혜 대상이 된다. 지급액수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2주당 AUD150(약 13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배우자의 2주당 소득이 AUD1,325(약 11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주당 AUD686(약 5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²⁴⁾ 그 외 아동보육기관 이용료, 주거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²⁵⁾

21)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Pregnancy, Birth and Baby.
<https://www.health.gov.au/health-topics/pregnancy-birth-and-baby>에서 2023.10.1. 인출.

22) Pregnancy Birth & Baby. Financial Support for Teenage Parents.
<https://www.pregnancybirthbaby.org.au/financial-support-for-teenage-parents>에서 2023.10.1. 인출.

23) Australian Government. FTB Part A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eligibility?context=22151>에서 2023.10.1. 인출.

24) Australian Government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newborn-upfront-payment-and-newborn-supplement-you-can-get?context=22186>에서 2023.10.1. 인출.

25) Australian Government. Income and assets tes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and-assets-tests-for-parenting>

3) 교육지원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 위치한 Balga Senior High School은 10대 가족지원센터(Teen Family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서호주정부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호주 지역의 모든 청소년임산부 및 청소년부모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0대 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부모프로그램(Young Parent Program)과 돌봄센터(Childcare Center)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프로그램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산부 및 청소년부모가 학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와 생계비 지원, 부모교육 및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교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는 청소년부모가 등교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부모지원상담사(Parent Support Worker)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도와주며, 그 외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청소년부모를 연계해준다.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담 및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도 제공된다.²⁶⁾

7. 뉴질랜드

1) 청소년부모급여

뉴질랜드 사회발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청소년부모에게 생계비, 양육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6~19세 청소년부모에게는 청소년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64)」 제164조에 청소년부모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16, 17세의 한부모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당 NZD272.74(약 21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률혼, 시민동반자, 또는 사실혼의 청소년부모일 경우에는 주당 NZD606.86(약 48만 원)이 지급된다.²⁷⁾ 청소년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일제 교

-payment?context=22196에서 2023.10.1. 인출.

26) Teen Family Centre. Young Parent Program.
<https://www.teenfamilycentre.org.au/young-parents-program>에서 2023.10.1. 인출.

27) New Zealand Government. Young Parent Payment.
<https://www.workandincome.govt.nz/map/deskfile/youth-service-tables/you>

육과정에 등록해 있거나, 직업 관련 훈련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상을 관리해 주기 위한 상담사가 배정되어 도움을 준다. 예컨대 청소년서비스상담사(youth service provider)가 급여를 관리한다. 주요지출(월세, 전기료 및 수도세 등의 모든 관리비)은 직접 결제되며, 주당 NZD50(약 4만 1천 원)이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되어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남은 금액은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식료품, 생필품, 아기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예산짜기 훈련과정(budgeting courses)을 수강하고, 3개월의 기간 동안 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을 상담사에게 보여주면, 주당 NZD10(약 8천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해 준다. 또한 최소 3개월의 기간 동안 청소년서비스에 연계되어 있으면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녀를 공공건강기관(public health provider)에 등록시키며,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보육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경우에는 주당 NZD10(약 8천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해 준다.²⁸⁾

2) 학업지원

뉴질랜드 12개 지역²⁹⁾에는 10대 부모를 위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오클랜드의 “Connected Learning Centre”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부모 지원 기관이다. 청소년부모는 본교 수업에 출석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때는 아이돌봄이 제공된다. 또한 아이돌봄 센터에 자녀를 등록시킬 경우, 시간제 교사로부터 다양한 과목의 학습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등·하교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³⁰⁾

ng-parent-payment-current.html에서 2023.10.1. 인출.

28)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Young Parent Payment.

<https://www.youthservice.govt.nz/payments/young-parent-payment/>에서 2023.10.1. 인출.

29) 12개 지역은 Auckland, Bay of Plenty, Canterbury, Hawke's Bay/Gisborne, Manawatu, Northland, Southland, Taranaki, Tasman, Waikato, Wairarapa, Wellington이다(Association of Teen Parent Educators New Zealand. Teen Parent Schools. <https://teenparentschools.org.nz/teen-parent-schools/>에서 2023.10.1. 인출.)

30) Association of Teen Parent Educators New Zealand. Teen Parent Schools. <https://teenparentschools.org.nz/teen-parent-schools/>에서 2023.10.1. 인출.

Ⅲ. 정책 과제

1. 서비스 연계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청소년부모에게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일이다. 청소년부모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복지제도 중 청소년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의 사례를 눈여겨 볼 만하다. 아일랜드의 청소년부모는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비교적 편안한 여건 속에서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다.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면 자신의 거주지에 직원의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거주지도, 기관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누구와 함께 만날 것인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도움 요청을 목적으로 한 기관방문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연계 되는 가장 큰 성과는 보다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을 수월하게 하여 청소년부모가 복지 제도로부터 주변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자를 만남과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 상담사가 마치 one-stop shop과 같은 역할을 하여 청소년부모가 자신과 관련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여건에서 청소년부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의 43.4%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지원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1: 509). 그러나 한부모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6.4%는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506). 또한, 미혼부모 및 한부모에 대한 공공서비스 실태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청소년(한)부모 및 한부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였는데, 담당자가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 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기초생계수급 정도 외에 관련 제

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허민숙, 2022: 27).

이와 달리 오히려 민간지원 단체에서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주민센터가 국내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다루는 종합 복지 서비스 안내 기관이고, 민간기관은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전문적·반복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의 어떤 담당자를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지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 대상인 청소년부모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및 한부모 지원 단체와의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홈페이지에 대표적인 민간지원 단체를 소개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여성가족부와 동주민센터 웹페이지에 민간단체를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현재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은 정부지원 없이 기업 및 일반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상황이 늘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가정방문서비스

해외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해서 눈에 띄는 사업은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유사하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임신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2020년 사업 첫째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실시되었고 2021년도에는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 고위험군 가정일 경우에 지속방문이 이루어지는데 고위험군에는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으로 안내되어 있어 청소년부모 가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방문의 경우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회의 방문이 이루어진다.

현재 시범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접

차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속방문의 경우 최소 25회의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동일한 기간에 60회가 넘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사례와 견주어볼 때 방문 횟수를 늘리고 방문 간격을 줄이기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가정방문서비스의 이점은 서비스 연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해당 가정에서 필요하나 정보를 잘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가정방문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연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청소년부모 등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시행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청소년부모가 양육자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성장하고 자립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방문서비스 담당자가 청소년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하는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결국 청소년부모 가정방문서비스는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뿐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동일한 비중의 관심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훈련, 정서 및 심리지원, 건강지원,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3. 교육지원

해외 주요국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교육지원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은 고등학교 학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있다. 다만, 현재 학습비 지원은 청소년한부모만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한부모는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 수는 12가구에 그치고 있다. 2015년 233가구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여성가족부, 2023.10.18.).

청소년부모의 학력취득은 청소년부모 자립의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학업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해외 청소년부모 지원의 핵심 과업은 교육지원이라 할만큼 청소년부모의 학업지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적으로 최소 고교졸업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학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충실하다. 학습을 하는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학업을 완수하는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다.

청소년부모를 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부모의 학력취득 지원뿐 아니라 이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다양한 복지 제도에 연결하는 유용한 매개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관찰된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사 및 교사와 교류하고, 이들을 통해 정부 지원에 연계되어 무사히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한)부모 교육 지원은 학원비 지원에 머물러 있다. 아이돌봄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지도 않고, 학업완수를 격려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없다. 검정고시 학원 등록 이외 별도의 학습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학습을 완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지원 서비스 수혜가 계기가 되어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호주 사례와 같이 출산 후에도 평범한 학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에 재학하면서 교내 돌봄서비스 및 교통편의 등을 지원받는 것이나, 현재 한국에서 현실화하기에 한계가 분명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직되고 제한적인 교육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서비스 마련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학력이 부족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학원의 수업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워 또다시 중도탈락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습비 지원 외 학업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간지원 단체인 킹메이커에서도 전직 학원강사 경력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청소년부모의 검정고시 및 대학입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자립(주거)지원

청소년부모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이들의 자립이다. 주요국에서 청소년부모의 학업지원에 중점을 두는 중요한 이유도 학력 취득이 자립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생계비 지원, 양육비 지급,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은 청소년부모의 자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생활기술, 생활비 관리, 부모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뉴질랜드는 청소년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을 받거나 취업훈련을 받는 것을 수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생계비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상담사가 생활비 지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생활기술을 향상시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부모의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부지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거주공간으로서의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거주와 독립적 주거 공간을 결합시킨 형태의 주거 형태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미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환주거'가 검토가능한 주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순환주거는 자원과 자립역량이 부족한 청소년부모가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해주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설거주와 재가의 중간단계로서의 순환주거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사례관리사가 개입하여 복지서비스에 연계해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순환주거에 거주하는 동안 월세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순환주거 퇴소 이후의 주거상황을 계획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사례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 또는 만남을 통해 생활비 관리,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필요한 도움을 받고, 지역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이 점도 있다. 특히 사례관리의 결합은 청소년부모의 고립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의 중요한 요소임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순환주거 제공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을 순환형 주거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시사점

이 글은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설계하려는 시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10대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개입 사례가 충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 검토 결과, 청소년부모는 원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관계가 소원하여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지원보다는 청소년부모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서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자료가 제한적인 가운데, 유사한 취약성에 놓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보다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저소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 및 자립을 위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고용과 비교적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된다.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학업을 지속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해외 지원 제도도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소년부모의 학업완료를 중요한 과업으로 두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주요국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고,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함께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내시설을 통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의 도입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제약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연한 학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돌봄 등 학업 지속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집중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청소년부모 교육지원은 원활한 서비스 연계는 물론 청소년부모의 고립을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부모 및 그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3.10.18.).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사업 현황.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 정가원·송효진·선보영·최진희(2021). 2021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허민숙(2022).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
법조사처.
- Association of Teen Parent Educators New Zealand. Teen Parent
Schools. <https://teenparentschools.org.nz/teen-parent-schools/>
에서 2023.10.1.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FTB Part A eligibility.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family-tax-benefit-part-eligibility?context=22151>
에서 2023.10.1.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How much you can get.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newborn-upfront-payment-and-newborn-supplement-you-can-get?context=22186>에서 2023.10.1.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Income and assets tests.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and-assets-tests-for-parenting-payment?context=22196>에서 2023.10.1. 인출.
-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Pregnancy, Birth and Baby.
<https://www.health.gov.au/health-topics/pregnancy-birth-and-baby>에서 2023.10.1. 인출.
- British Columbia. Young Parent Program.
<https://www2.gov.bc.ca/gov/content/family-social-supports/caring-for-young-children/child-care-funding/young-parent-program>
에서 2023.10.1. 인출.
- Child Care Subsidy Regulation.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74_97
에서 2023.10.1. 인출.

Child Poverty Action Group. Financial Help for Young Parents.
<https://cpag.org.uk/welfare-rights/resources/factsheet/financial-help-young-parents>에서 2023.10.1. 인출.

Child Poverty Action Group in Scotland(2023). *Universal Credit*.
<https://cpag.org.uk/sites/default/files/files/resource/CPAG-scot-factsheet-UC-Apr-22.pdf>에서 2023.10.1. 인출.

Cornell Law School. Ohio Admin. Code 5101:1-23-50 - Ohio works first: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program.
<https://www.law.cornell.edu/regulations/ohio/Ohio-Admin-Code-5101-1-23-50>에서 2023.10.1. 인출.

Department of Health(2012). *The Family Nurse Partnership Programme: Information Leaflet*.

Elim Housing. Services for Young Parents.
<https://www.elimhousing.co.uk/support-services/services-for-young-parents/>에서 2023.10.1. 인출.

Fairfield County Job & Family Services(2022).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https://cdn5-hosted.civiclive.com/UserFiles/Servers/Server_230780/File/Forms/misc_community-services/LEAP%20Brochure.pdf
에서 2023.9.1. 인출.

Family Nurse Partnership. The Programme.
<https://fnp.nhs.uk/about-us/the-programme/>에서 2023.9.15. 인출.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Bureau of Family and Community Outreach(2015). *Teenage Parent Programs In Florida School Districts*.

Florida Government. The 2023 Florida Statu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1000-1099/1003/Sections/1003.54.html에서 2023.10.17. 인출.

Government of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L-Learn.
<https://www.cdss.ca.gov/cal-learn>에서 2023.9.15. 인출

Government of Ontario.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 <https://www.ontario.ca/document/ontario-works-policy-directives/82-learning-earning-and-parenting-leap>에서 2023.10.1. 인출.
- Government of UK. Care to learn. <https://www.gov.uk/care-to-learn>에서 2023.10.15. 인출.
- Government of UK. Care to Learn. <https://www.gov.uk/care-to-learn/what-youll-get>에서 2023.10.1. 인출.
- Government of UK. Understand how your council works. <https://www.gov.uk/understand-how-your-council-works>에서 2023.10.16. 인출.
- Justia. 2006 Ohio Revised Code - 5107.30. Learning, earning, and parenting program for teens. https://law.justia.com/codes/ohio/2006/orc/jd_510730-10877.html에서 2023.10.1. 인출.
- Laois County Childcare Committee. Teaching and Employment Childcare Scheme. <https://www.laoischildcare.ie/scheme/training-and-employment-childcare-scheme-tec/>에서 2023.10.1. 인출.
- Maine Equal Justice. TANF and Teen Parents. https://maineequaljustice.org/site/assets/files/1690/doc_2_4_teen_parents_tanf.pdf에서 2023.9.1. 인출.
- Miller, Ted R(2015). Projected Outcomes of Nurse-Family Partnership Home Visitation During 1996-2013, USA. *Prevention Science*, 16(6), 765-777.
- Ministry of Justice, HM Prison & Probation Service(2021). *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2017: Duty to Refer*.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Young Parent Payment.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young-parent-payment.html>에서 2023.10.1. 인출.
- New Brunswick. Case Management - Social Assistance Clients.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social_development/services/services_renderer.14336.Case_Management_-_Social_Assistance_clients.html에서 2023.10.1. 인출.
- New Zealand Government. Young Parent Payment.

- <https://www.workandincome.govt.nz/map/deskfile/youth-service-tables/young-parent-payment-current.html> 에서 2023.10.1. 인출.
- NHS. Services and support for parents: Your pregnancy and baby guide.
<https://www.nhs.uk/conditions/pregnancy-and-baby/services-support-for-parents/> 에서 2023.10.1. 인출.
- Pregnancy Birth & Baby. Financial Support for Teenage Parents.
<https://www.pregnancybirthbaby.org.au/financial-support-for-teenage-parents>에서 2023.10.1. 인출.
- Public Health England(2020). *No Child Left Behind: A public health informed approach to improving outcomes for vulnerable children.*
-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2020). *Parenting: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Young Parents.*
- Teen Family Centre. Young Parent Program.
<https://www.teenfamilycentre.org.au/young-parents-program>에서 2023.10.1. 인출.
- The Bessborough Centre.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https://www.bessborough.ie/teen-parents/> 에서 2023.10.1. 인출.
- The Cridge Young Parent Outreach Program. Outreach Support Services. <https://youngparentoutreach.com/outreach-services/>에서 2023.10.1. 인출.
- The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2020). Summary of Work 2020.
https://www.tpsp.ie/download.php?page_id=1&fragment_id=1262&download_id=166에서 2023.10.11. 인출.
- TPSP. Benefits and Entitlements.
http://www.teenparents.ie/iopen24/defaultarticle.php?cArticlePath=18_36에서 2023.10.1. 인출.
- Treoir(2020). *Being there for them: A booklet for grandparents of children whose parents are not married to each other.*
<https://www.tpsp.ie/grandparents.PAGE7.html>에서 2023.10.11.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21). *The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Program.*

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GRADS).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learning-alternatives/graduation-reality-and-dual-role-skills-grads> 에서 2023.10.13. 인출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2016). *Graduation, Reality, and Dual-role Skills (GRADS) Program for Pregnant and Parenting Teens: Outcome Evaluation and Benefit-Cost Analysis.*

Abstract

Double Difficulty: Raising a Child as Young Parents

Min-Sook Heo*

Although there have been young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together, neither laws nor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until 2021 based on the bias that young parent must be a single mother. Now 「Youth Welfare Support Act」 clearl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young parents and clarifies social services that need to be funded and run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young parents, specific welfare services have not yet been prepared or provid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plores how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Canada, Ire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deal with similar issues. These countries have relatively more diverse policy experiences in supporting adolescent par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of them are focusing on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to young parent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completion of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arents and hence making a crucial difference in all aspects of the whole family's life. Also,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ducation programs include childcar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to help them continue learning and training in a stable way.

With regard to prepar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grams for young par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s that they are not only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but also young people who need to be supported and encouraged.

Keywords : Diverse family, young parents, child-rearing, policy for young parents, home visiting service

*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